

E-1 : 총괄 안전관리 계획서

1. 목 적

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 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공사 착공전에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제출대상 공사

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시설물 (동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)의 건설공사

※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

구분	1종 시설물	2종 시설물
1. 도로 · 교량 · 터널	· 특수교량(현수교, 사장교, 아차교, 최대경간 50미터 이상의 교량) · 연장500미터 이상 교량 · 연장 1천미터 이상 교량 · 3차선 이상 터널	· 연장 100미터이상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· 고속국도,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,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
2. 철도 · 고속철도 · 도시철도 · 일반철도 - 교량 - 터널	· 교량, 터널 및 역사 · 교량, 고가교 및 하저터널 · 트러스교량 · 연장500미터이상 교량 · 연장1천미터이상 교량	· 1종시설물외의 터널 및 역사 · 연장100미터 이상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·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

구분	1종 시설물	2종 시설물
3. 항만	· 갑문시설 및 말뚝구조의 계류시설(5만톤급 이상)	·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
4. 댐	· 다목적댐,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 용수전용댐	·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
5. 건축물	· 21층이상의 공동주택 ·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5만㎡이상 건축물	· 16층이상 20층이하 공동주택 ·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3만㎡이상 건축물 ·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㎡이상의 공항청사· 철도역사· 자동차여객터미널· 종합여객시설· 종합병원· 판매시설·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
6. 하천	· 하구둑 ·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직할 하천의 수문	·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직할 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(수문은 제외) · 시안에 있는 하천의 수문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문
7. 상하수도-폐기물 매립 시설	· 공업상수도 및 부대시설 · 공업용수도 및 부대시설 · 폐기물매립시설(매립용적 40만톤이상)	· 지방상수도 및 부대시설 · 하수처리장 · 매립용적 20만톤이상의 폐기물매립 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

- ②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건설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- 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
- ④ 제1호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/인가/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3. 작성 및 제출

(1) 작성

① 작성자

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

② 작성자 자격요건

건설기술자로서 토목 및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

※ 건설 기술자란?

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“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

(2) 확인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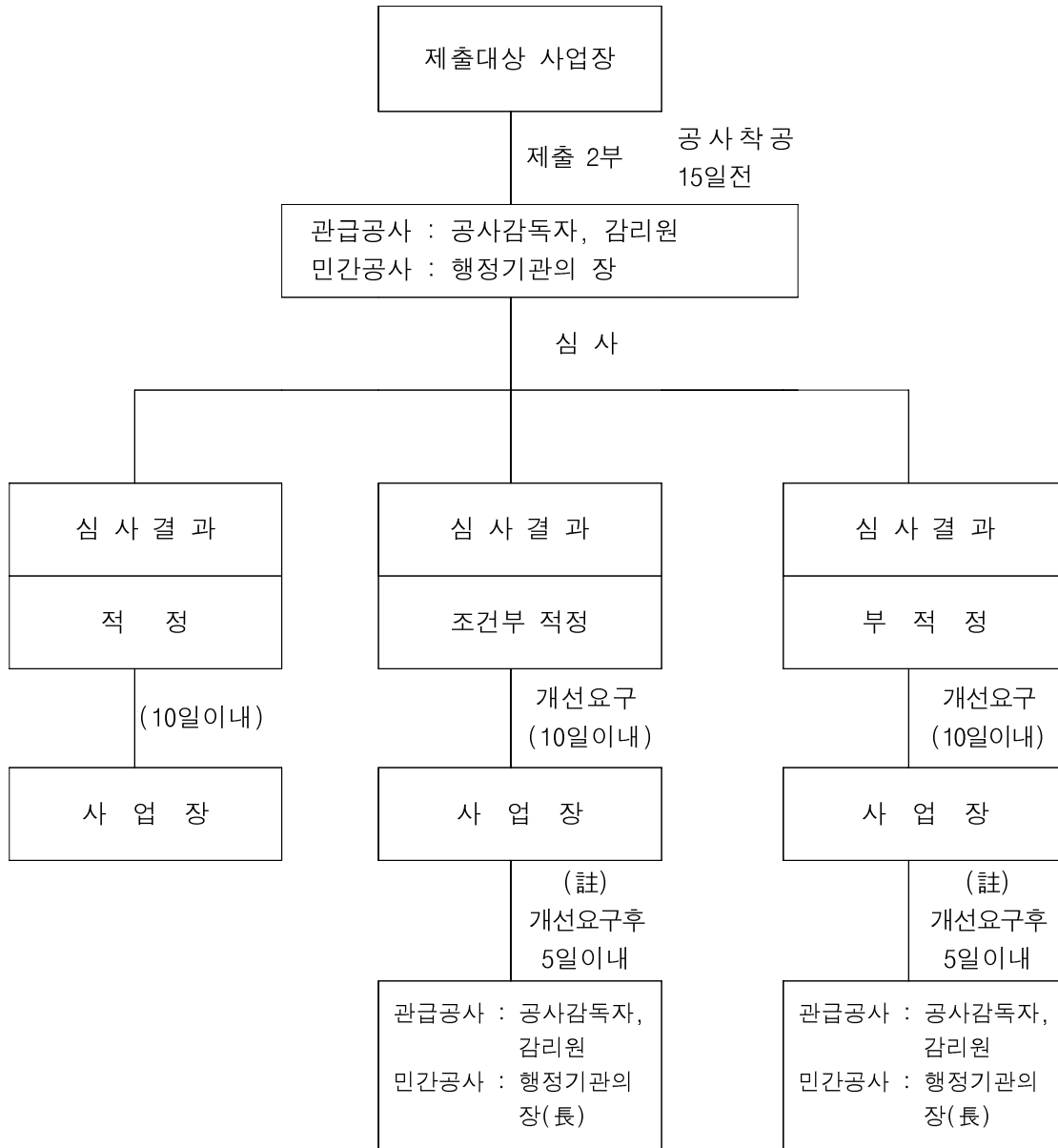
① 관급공사

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

② 민간공사

당해 건설공사를 인·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(長)에게 제출

총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FLOW



(註)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이내 재확인 신청

4.첨부 서류

ㄱ. 총괄 안전관리계획서

- (1) 공사 개요
 - ① 위치도, 공사개요, 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
 - ② 공사현황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
- (2)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
 - ①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
 - ② 안전관리 조직표
- (3) 공정별 안전점검계획
 - ① 안전점검 공정표
 - ② 자체안전점검 실시계획
 - ③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
- (4)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
 - ① 지하매설물 또는 인접시설물 관련 도면 및 서류
 - ② 인접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
 - ③ 지하매설물 방호 또는 안전시설물 보호조치
- (5)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
 - ① 공사장 주변 도로상황 관련 도면 및 서류
 - ② 교통안전시설물의 종류,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
 - ③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
- (6) 안전관리비 집행계획
 - ① 안전관리비 산정내역
 - ②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계획
- (7) 안전교육계획
 - ① 정기, 일상,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계획
- (8)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
 - ① 내·외부 비상연락망
 - ② 비상경보, 긴급대피,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

ㄴ.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

- (1) 가설공사
 - ① 가설구조물의 재료 및 설치개요

- ②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
 - ③ 가설물 안정성 계산서
 - ④ 각 공종별 공사용 기계, 설비 등 배치계획의 적정 여부
 - ⑤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계획
 - ⑥ 각 공종별 시공상세도
- (2)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
- ① 굴착, 흙막이, 발파, 항타 등의 개요 및 공법
 - ②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
 - ③ 흙막이, 비탈면 등의 안정성 계산서
 - ④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
 - ⑤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계획
 - ⑥ 토사 및 버력반출계획
 - ⑦ 낙반, 슬라이딩 방지계획
 - ⑧ 각 공종별 공사용 기계, 설비 등 배치계획의 적정 여부
 - ⑨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계획
 - ⑩ 각 공종별 시공상세도
- (3) 콘크리트 공사
- ① 거푸집, 동바리, 철근, 콘크리트공 등에 대한 공사개요 및 공법
 - ② 거푸집, 동바리, 철근, 콘크리트의 안정성 계산 결과
 - ③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
 - ④ 각 공종별 공사용 기계, 설비 등 배치계획의 적정 여부
 - ⑤ 각 공종별 시공상세도
- (4) 강구조물 공사
- ① 사용자재, 장비 등의 공사개요 및 공법
 - ② 강구조물 안정성계산서
 - ③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
 - ④ 각 공종별 공사용 기계, 설비 등 배치계획의 적정 여부
 - ⑤ 각 공종별 시공상세도
- (5) 성토 및 절토공사 (흙담공사 포함)
- ① 자재, 장비 등의 공사개요 및 공법
 - ② 비탈면 등의 안정성 계산서
 - ③ 공사용 장비, 기구 등의 배치계획

④ 배수계획

(6) 해체공사

- ① 구조물의 해체대상, 해체기계 등의 공사개요 및 공법
- ② 안전점검계획 및 안정성 검토서
- ③ 각 공종별 공사용 기계, 설비 등 배치계획의 적정 여부
- ④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계획
- ⑤ 각 공종별 시공상세도

5. 심사 판정

① 적 정

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

② 조건부 적정

안정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③ 부적정

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